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773호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회) |

**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 |
| 제출연월일 | 2024년 11월 15일 |

#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 
번호

773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 사업은 '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'<sup>\*</sup>대 상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서,
  - \*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
- 노후 공공건축물(별관, 1973년 건축)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개보수와 증축을 한 것임
- 이에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□ 재산의 취득(청주의료원 별관 증축)

- 위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(사직동), 청주의료원 부지 내
- 사업기간 : 2021. 5. ~ 2024. 8.
- 규모 : 5,039.24m<sup>2</sup>(증축 110.24m<sup>2</sup>, 개·보수 4,929.00m<sup>2</sup>)

| 층별   | 청주의료원 별관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개·보수(m <sup>2</sup> ) | 증축(m <sup>2</sup> 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하1층 | 561.00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양약창고, 한약창고, 항암조제실 등           |
| 지상1층 | 1,119.00              | 27.56               | 탕전실, 한약조제실, 노조사무실 등           |
| 지상2층 | 1,083.00              | 27.56               | 공공보건의료지원단, QI팀, 간호부 등         |
| 지상3층 | 1,083.00              | 27.56               | 감사팀, 안전보건팀, 전산시스템실 등          |
| 지상4층 | 1,083.00              | 27.56               | 기획팀, 중회의실, 총무팀, 재무회계팀 등       |
| 계    | 4,929.00              | 110.24              | 110.24m <sup>2</sup> 는 계단실 증축 |

- 사업비 : 8,408,877천원(국비 5,886,214천원, 도비 2,522,663천원)

### 3.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별첨

#### 4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, 제14조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



##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14-2)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| 일련<br>번호 | 재 산 표 시 |   |          | 추정가액      | 취 득 시 기          | 취 득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재산<br>전소유자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| 지목      |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 적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계        | 토지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건물      | 1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039.24 | 8,408,877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기타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1        | 토지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건물      | 충북 청주시 서원구<br>흥덕로 48(사직동)<br>청주의료원 부지 내 | 5,039.24 | 8,408,877 | '24.8경<br>(준공 후) | 청주의료원 별관<br>그린리모델링<br>시그니처 사업 | 충청북도         | 증축 |
|          | 기타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2        | 토지      | 이하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건물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기타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3        | 토지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건물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기타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|

# 관계 법령 발췌

## 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】

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|
|--|--|
| <p>제10조의2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</p> 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| <p>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</li> <li>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</li> </ol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</li> <li>2.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</li> <li>3.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</li> <li>4.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. 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</li> </ol> |

## 【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】

|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  |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  |
|---|--|
| <p><b>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</b> ① 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 (이하 “도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취득의 경우 : 20억원</li> <li>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</li> </ul> </li> <li>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6천제곱미터</li> <li>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5천제곱미터</li> </ul> </li> </ol> <p><b>제14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</b>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<b>제28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)</b>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제15호 서식)</li> <li>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16호 서식)</li> <li>3. 양여계약서(별지 제17호 서식)</li> <li>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18호 서식)</li> <li>5. 교환계약서 (별지 제19호 서식)</li> </ol> |